

- 2024년 5월 1차 -
통장협의회 회의 자료

【서 농 동】

목 차

1	The 경기패스 시행 안내	1
2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
3	반지하주택 등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안내	3
4	투명파트병 분리배출제 안내	4
5	2024년 기흥행복콘서트(영덕2동)편 개최	5
6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	6

1 The 경기패스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24년 5월 1일부터
- 신청대상 : 19세 이상 경기도민
- 내 용 :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환급
[환급율 : 일반(20%) / 청년(19~39세,30%) / 저소득층(53%)]
- 지원범위 : 버스, 지하철 등(신분당선, GTX, 광역버스 포함)
※ 별도 표를 발급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KTX,SRT,항공 등) 제외
- 신청방법
 - 1)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
: 알뜰교통카드 또는 홈페이지(alcard.kr)를 통하여 K-패스 회원 전환 후
(‘24.6.30.까지) 별도 카드 발급 없이 알뜰교통카드 사용
 - 2) 신규가입회원
: ‘24.4.24.(수)부터 각 카드사에서 K-패스 신청 후, 5월 1일부터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korea-pass.kr)가입 및 카드 등록 후 사용
※카드사(11개) : 신한, 우리, 하나, 삼성, 국민, 농협, BC(기업,케이뱅크,광주은행), 이동의 즐거움, DGB유플이
※ The 경기패스는 주소지가 경기도일 경우, K-패스 사용 시, 경기도민 추가 혜택(무제한 환급)이 자동 적용됨
- 문 의 처 :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297) / 경기도 콜센터(☎031-120)

다되고 더된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 '다' 경기도민이라 혜택도 더!

지침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 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제외

지원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한 없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환급
(19~39세 청년) 매달 교통비의 30% 환급
- 40세 이상 : 매달 교통비의 20% 환급
- 학의계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 6~18세 도민은 연24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함 참고)

신청방법 K-패스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K-패스(www.korea-pass.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2024년 5월 1일부터 사업시행

문의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5월부터 The 경기패스



2024.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기 간

• 2024. 4. 30(화) ~ 5. 29(수)

대 상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열 란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개별(공동)주택 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이의신청방법

- **개별주택**: 주택 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방문·팩스)
-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지사 제출
(우편·방문·팩스)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2024년 6월 중 회신해 드립니다.

문 의 처

- **개별주택**: 처인구 324-5231 / 기흥구 324-6193 / 수지구 324-8192
- **공동주택**: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반지하주택 등 거주자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사업을 안내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반지하주택 등 거주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사업내용

- 집중호우시 실시간으로 침수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알람장치 설치 지원
- 침수감지 센서를 통해 침수감지 시, 거주자, 가족, 시(市) 담당자 등에게 문자 알림
- 설치비용은 무료이며,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 제출 필수

※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우기(6.30.)전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이제 기본!

라벨 떼고 비우고 압착해 전용 수거함에!

01 라벨을 떼고 02 내용물 비우고 03 압착해서 04 따로 분리수거

따로 버리는 이유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
다시 투명페트병으로 재탄생
옷, 운동화 등의 섬유 추출

투명페트병 종류는? 생수병
음료수병

- ✓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영화음악 공연을 펼칠 '2024년 기흥행복콘서트(영덕2동편)'를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YONGIN SPECIAL CITY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024 기흥행복콘서트 시네마 콘서트

2024. **5.17** FRI 19:00 ※사전공연 18:30~
영덕2동 청곡초등학교

클라운 송
마임, 서커스

아모로소
클래식 앙상블

포마스
팝페라 그룹

한아름
소프라노

후원  용인문화재단
Yongin Cultural Foundation

 청곡 초등학교
CHEONGGOK ELEMENTARY SCHOOL

□ 「긴급복지지원법」도입 배경 및 기본개요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란?

- ⇒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 및 보호하기 위한 제도
- ⇒ 신고의무자의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각 대상자에 필요에 맞게 지원

【위기상황】

- 사례1)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
- 사례2)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곤란
- 사례3)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 곤란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고방법

- 관할 시·군·구청(긴급지원 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고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